

영국 교통사고 경상환자 보상제도 개혁 (Whiplash Reform)의 내용 및 시사점

황현아 연구위원

- - 교통사고 자체는 감소한데 반해 보상 관련 분쟁은 오히려 증가하고 있고, 비교적 경상으로 분류되는 위플래쉬 부상(경추·요추 염좌, 운동제한 등) 관련 분쟁이 전체 분쟁의 85%를 차지함
 - 이에 영국 정부는 위플래쉬 부상 관련 분쟁 건수 및 비용을 줄이기 위해 위플래쉬 개혁을 추진함
- 計 위플래쉬 개혁은 ① 통증·불편(PSLA) 관련 보상기준 마련, ② 합의 시 진단서 의무화, ③ 소송비용 승소자 부담을 주요 내용으로 함
 - (PSLA 보상기준 마련) 기존에는 별도의 기준 없이 개별 합의·소송에서 보상액을 정하였으나, 향후 부상 기간별로 법무부장관이 정한 보상액에 따라 보상을 실시하게 됨
 - (합의 시 진단서 의무화) 허위·과다 청구를 방지하기 위해 합의 시 진단서 확인을 의무화 하고, MedCo Portal을 활용하여 진단서의 객관성을 확보하고 진단서 발급 비용을 합리화함
 - (소송비용 승소자 부담) 소액사건은 승소자 스스로 소송비용을 부담해야 하는바, 소액사건 기준을 £1,000에서 £5,000로 상향하여 소액청구 건에 대한 과다한 소송비용 지출을 자제하도록 유도함
- 영국 정부는 위플래쉬 개혁을 통해 연간 £11만(약 1조 7천억 원)가 절감되고, 자동차보험계약 1건당 £35(약 5만 원)의 보험료 인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함
 - 영국 정부는 위플래쉬 개혁을 통해 절감되는 비용의 대부분을 보험료 인하의 재원으로 활용하도록 하였고, 영국 금융감독청이 이를 모니터링 할 예정임
- 경상환자 보상제도 개혁은 자칫 피해자의 치료 및 건강회복에 장해가 될 수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나, 허위·과다 청구 방지 및 보험금 지급 합리화를 통해 전체 보험계약자의 부담을 완화할 필요는 있음
 - 영국의 위플래쉬 개혁은 개혁에 따른 이익이 전체 보험계약자에게 귀속되도록 하였다는 점 및 진단서의 객관성을 확보함으로써, 허위·과장 청구를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도록 한 점에서 의의가 있음
- 경상환자에 대한 보상제도 개혁은 영국뿐 아니라 우리나라를 비롯한 여러 국가에서 논의되고 있는바, 향후 해외의 제도 변화 동향에 대한 지속적인 검토 및 공유가 필요함

1. 검토배경



- 영국은 경상환자에 대한 보상 합리화를 위해 위플래쉬 개혁(Whiplash Reform)을 추진하고, 그 일환으로 민사책임법(Civil Liability Act 2018, 이하 'CLA 2018')을 제정함
 - 위플래쉬 개혁은 ① 위플래쉬 부상(Whiplash Injury)¹)에 대한 보상기준 마련, ② 위플래쉬 청구 (Whiplash Claim) 관련 합의 시 진단서 확인 의무화, ③ 소액사건 범위 확대를 주요내용으로 함
 - 그 중 ①, ②를 반영하여 CLA 2018이 제정되었고, ③에 대해서는 별도 입법이 추진될 예정임
 - CLA 2018은 2018년 12월 확정되었고, 2020년 8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로 급변하는 경제 및 의료 상황을 고려하여 2021년 4월로 시행이 연기됨
- 본고에서는 영국 위플래쉬 개혁의 배경 및 주요내용을 살펴보고, 우리나라의 경상환자 보상 관련 제도개선 논의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

2. 영국 위플래쉬 개혁의 주요내용



가. 추진배경 및 목적

- 영국은 2010년부터 민사소송 관련 제도개혁(Civil Justice Reform)을 추진 중이며, 그 중 대표적인 사항이 ① 성공보수 관련 제도개선(LASPO 2012)과 ② 위플래쉬 개혁(CLA 2018)임
 - 영국 민사소송 관련 제도개혁은 잭슨 리포트²⁾의 제안에 기초한 것으로, 비효율적이고 불필요한 민사분쟁 확대로 인한 사회적 비용 증가 문제를 해소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함³⁾

¹⁾ 위플래쉬 부상(Whiplash Injury)은 외부 충격에 의한 연조직 부상(Soft Tissue Injury)의 일종으로 통상 '편타성 손상'으로 번역되나, 우리나라 의료 실무에서 해당 증상을 '위플래쉬'라고 지칭하는 점, CLA 2018 등 본고에서 주로 다루는 영국의 법령 및 자료에서 '위플래쉬'라는 표현이 빈번하게 사용되고 개혁 명칭 자체가 '위플래쉬 리폼(Whiplash Reform)'인 점을 고려하여, 이하 '위플래쉬 부상'이라 함

²⁾ Rupert Jackson(2009. 12), "Review of Civil Litigation Costs: Final Report"; Rupert Jackson은 영국 항소법원 판 사로, 위 보고서는 영국 법무부의 요청에 따라 민사소송 비용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에 관한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작성되었음

³⁾ 참고로, 영국의 Civil Justice Reform은 ① 성공보수 승소자 부담, ② 인신상해 사건의 성공보수 한도 제한(손해배상액의

- 보험 분야에서는 민원대행회사(Claim Management Company, CMC)들이 소액 보험금 청구 건을 수익모델로 삼아 불필요한 분쟁 증가를 유발하는 문제점이 있었음⁴⁾⁵⁾
- 영국 정부는 No-Win No-Fee⁶) 보수약정이 불필요한 분쟁을 유발한다고 보아, 2012년 관련 법률 (LASPO 2012)⁷)을 제정하여 이에 대한 규제방안을 마련함
 -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액 청구 관련 분쟁 및 민원의 건수가 줄어들지 않는 한계가 발생함
- 위플래쉬 개혁은 위플래쉬 부상 관련 손해배상 금액, 합의 절차 및 소송비용 배분에 특칙을 마련하는 것으로, 경상환자에 대한 보상 합리화를 통한 자동차보험료 절감이 주된 목적임
 - 영국에서는 2006~2016년 사이 차량 안전성이 제고되고 전체 교통사고 건수가 감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, 교통사고 인신상해 관련 분쟁 건수는 오히려 50% 증가하였음8)
 - 교통사고 인신상해 관련 분쟁 중 위플래쉬 청구가 약 85%를 차지하고, 이와 관련된 분쟁 처리 비용도 증가하여 자동차보험 가입자의 보험료 인상을 야기하고 있음
 - 영국 정부는 LASPO 2012를 통해 성공보수 제도를 개혁함으로써 소액 청구 관련 불필요한 분쟁을 억제 하고자 하였으나, 위플래쉬 청구 관련 분쟁을 감소시키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음
 - 이에 위플래쉬 개혁을 통해 위플래쉬 부상 관련 소액청구, 과장청구 및 사기적 청구를 억제하고, 분쟁의 건수 및 비용을 줄임으로써 자동차보험 가입자의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함

나. 적용대상 및 주요내용

■ 위플래쉬 부상은 목, 등, 어깨의 연조직에 발생한 염좌·긴장·찢김·파열 등의 부상을 의미하며, 위플래쉬 부상에 관한 CLA 2018의 특칙은 차량 탑승자에 대해서만 적용됨

^{25%),} ③ 손해배상액에 비례한 보수 약정(Damage-Based Agreement, DBA) 도입, ④ 인신상해사건 관련 소개비 지급 및 사건 유인 금지, ⑤ 위플래쉬 청구 관련 진단서(Medical Report) 발급 비용 일원화, ⑥ 중피종(Mesothelioma) 피해 자에 대한 의무지급절차 마련(※ 악성중피종은 암의 일종으로 석면이 원인이 되어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석면피해구제제도 의 일환으로 중피종에 대한 피해구제가 실시됨), ⑦ 교통사고 손해배상 관련 고정환급비용 축소방안(※ 고정환급비용 (Fixed Recoverable Cost, FRC)은 소송의 결과에 따라 원고가 회수할 수 있는 소송비용을 의미함)으로 구성됨; UK Ministry of Justice(2015. 5), "Policy paper: 2010 to 2015 government policy: civil justice reform"

⁴⁾ ABI(2017. 1), "ABI Response to Reforming the soft tissue injury('whiplash') claims process"

⁵⁾ 참고로 영국 민원대행업의 문제점에 대해서는, 송윤아(2020. 5. 25), 「영국의 민원대행업 규제개혁과 시사점」, 『KIRI 리포트』에서 상세히 분석하고 있음

⁶⁾ 승소하는 경우에만 보수를 지급받기로 하는 약정을 의미함. 통상 소송 관련 보수는 '착수금+성공보수'로 구성되거나, '시간 당 보수×투입한 시간'으로 산출하는데, 'No-Win No-Fee'는 착수금 없이 성공보수만 지급받기로 하는 약정으로, 이러한 약정이 있는 경우 소송 당사자는 소송비용에 대한 부담 없이 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되어 남소의 우려가 있음

⁷⁾ Legal Aid, Sentencing and Punishment of Offenders Act 2012(LASPO 2012)는 2012년 5월 제정되어, 2013년 4월부터 시행되고 있음

⁸⁾ UK Ministry of Justice, "Civil Liability Act 2018: Factual Q and A", p. 2

- 위플래쉬 부상(Whiplash Injury)은 목·등·어깨의 연조직(Soft Tissue)⁹⁾에 발생한 염좌(Sprain), 긴장 (Strain), 찢김(Tear), 파열(Rupture)을 의미함¹⁰⁾
 - 주요 증상으로는 통증, 운동성 감소, 두통, 근육경련, 부기·종창 등이 있으나, 이에 한정되지 않음11)
- 위플래쉬 부상 관련 CLA 2018의 특칙은 자동차 탑승자에 대해서만 적용되고, 오토바이 운전자, 자전거 운전자 및 보행자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음¹²)
- 計 위플래쉬 개혁은 ① 통증·불편(PSLA)에 대한 보상기준 마련, ② 합의 시 진단서 등 의료 증빙 확인 의무화, ③ 교통사고 인신상해 소액사건의 기준 상향(£1,000 → £5,000)을 내용으로 함

〈표 1〉 위플래쉬 개혁(Whiplash Reform) 주요내용

항목	내용
위플래쉬-PLSA 보상기준 마련	부상기간이 2년 이내인 위플래쉬 부상으로 인한 통증 및 불편(Pain, Suffering and Loss of Amenity, PSLA)에 대한 손해배상 기준 마련
위플래쉬-합의 시	위플래쉬 부상 관련 보상을 위한 합의안 요청, 합의금 제안, 합의금 지급 및 수령을
진단서 의무화	위해서는 반드시 의학적 증빙을 확인하여야 함
소액사건 범위 확대	교통사고 관련 소액사건 범위를 현행 £1,000에서 £5,000로 상향함
(소송비용 승소자 부담)	(소액사건의 경우 승소한 원고는 피고에게 소송비용을 청구할 수 없음)

- (위플래쉬-PSLA 보상기준 마련) 부상기간 2년 이내의 위플래쉬 부상으로 인한 통증·불편에 대해서는 법무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손해배상액을 지급하도록 함
 - 위플래쉬 부상의 부상기간(Duration of Injury)¹³⁾이 2년 이내인 경우, 그와 관련된 통증·불편(Pain, Suffering and Loss of Amenity, PSLA)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은 법무부장관(Lord Chancellor)¹⁴⁾이 부상기간별로 미리 정한 기준에 따라 보상하도록 함¹⁵⁾
 - 영국의 경우 부상에 대한 치료 자체는 NHS(National Health Service)에서 무상으로 받을 수 있어, 보상 관련 다툼은 주로 PSLA 관련 손해배상에 집중되고 있음¹⁶⁾

⁹⁾ 근육, 힘줄, 인대, 피부 등을 의미함

¹⁰⁾ CLA 2018 s.1(2)

¹¹⁾ Whiplash Injury Draft Regulations s.2

¹²⁾ CLA 2018 s.1(4)(a)

¹³⁾ 부상기간(Duration of Injury)은 실제 위플래쉬 부상기간, 또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였을 경우 예상되는 부상기간을 의미 함(Whiplash Injury Draft Regulations s.3(2))

¹⁴⁾ 영국의 'Lord Chancellor'는 일반적으로 '대법관'으로 번역되나, 'Lord Chancellor'는 의회 및 내각의 일원으로 법무부 장관(Secretary of State for Justice)을 겸하고 있는 점, 사법부 수장인 'Lord Chief Justice'와 구별이 필요한 점을 고려하여, 여기서는 '법무부장관'으로 번역함

¹⁵⁾ CLA 2018 s.3

¹⁶⁾ 영국의 PSLA는 우리나라의 경우. 합의금. 통증 완화·불편 개선 관련 처치비용 및 위자료 등에 해당할 것으로 생각됨

- 구체적인 보상기준은 하위 규정(Whiplash Injury Regulation)에서 정해질 예정인데, 현재 공개된 규정 초안에서는 〈표 2〉와 같이 보상기준을 제시하고 있음
-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경우 보상기준보다 높은 금액으로 보상할 수 있는데,17) 현재 공개된 규정 초안에서는 기준 금액의 20% 범위에서 인상할 수 있도록 함18)

〈표 2〉 위플래쉬-PSLA 보상액

ᆸᄼᄓᄼ	2015년 평균 보상액	위플래쉬 개혁 후 보상액(예상)	
부상기간		파운드화 기준	원화 환산액
3개월 이하	£1,750	£235	36만 원
3개월 초과 ~ 6개월 이하	£2,150	£470	72만 원
6개월 초과 ~ 9개월 이하	£2,600	£805	123만 원
9개월 초과 ~ 12개월 이하	£3,100	£1,250	192만 원
12개월 초과 ~ 15개월 이하	£3,500	£1,910	293만 원
15개월 초과 ~ 18개월 이하	£3,950	£2,790	428만 원
18개월 초과 ~ 24개월 이하	£4,500	£3,910	600만 원

- 주: 1) '위플래쉬 개혁 후 보상액(예상)'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임
 - 2) 원화 환산액은 2020년 7월 27일 매매기준율(£1=1,534.81원)을 적용하되, 만 원 미만은 반올림함
- 자료: 1) 위플래쉬 개혁 후 보상액-Whiplash Injury Draft Regulation s.3
 - 2) 2015년 평균 보상액-UK Ministry of Justice(2017. 2)19)
- (위플래쉬-합의 시 진단서 등 의료증빙 확인 의무화) 위플래쉬 부상에 대해서는 의학적 증빙이 없는 상태에서 합의, 합의 제안·요구. 합의금 지급·수령을 할 수 없음
 - 위플래쉬 부상에 대한 보상 합의(Settlement of Claim) 시, 합의안 요청, 합의금 제안, 합의금 지급 및 수령을 위해서는 반드시 의학적 증빙을 확인하여야 함20)

 - 하위규정 초안에서는 MedCo Portal²¹⁾을 통해 선정된 의료전문가가 확인을 거친 진단서(Medical Report)를 부상에 관한 의학적 증빙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음²²⁾

18) Whiplash Injury Draft Regulation s.4

¹⁷⁾ CLA 2018 s.5

¹⁹⁾ UK Ministry of Justice(2017. 2), "Part1 of the Government Response to: Reforming the Soft Tissue Injury('whiplash') Claims Process", p. 22

²⁰⁾ CLA 2018 s.6

²¹⁾ MedCo Portal(https://www.medco.org.uk/)은 영국 법무부의 '교통사고 소액사건에 대한 소송 전 절차기준(Pre-Action Protocol for Low Value Personal Injury Claims in Road Traffic Accidents, RTA PAP)'에 따라, 교통사고 관련 진 단서의 독립성과 품질을 제고하기 위해 도입됨

- 진단서 확인 의무를 위반한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되거나 합의 자체가 무효가 되지는 않지만, 위반에 대한 별도 제재가 부과될 수 있음²³)
- **□통사고 소액사건 기준 상향)** 영국 법무부는 민사소송법(Civil Procedure Rule) 개정을 통해 교통사고 인신상해 소액사건 기준을 현행 £1,000에서 £5,000로 상향할 예정임
 - 소액사건의 경우 승소한 원고는 피고에게 소송비용을 청구할 수 없는바, 소액사건 범위가 £5,000로 확대되면 위 금액 이하의 사건은 원고가 승소하더라도 피고에게 소송비용을 청구할 수 없게 됨
 - 즉, £5,000 이하의 소액사건의 경우 원고는 승소하더라도 자신이 지출한 변호사 선임 비용 등 소송 비용을 피고에게 청구할 수 없음
 - ◎ 이를 통해 소액사건에 대해서는 원고가 대리인을 선임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대신 포털 시스템을 통해 직접 보험금을 청구하도록 유도하려는 것임
 - 영국 정부는 소액사건 보험금 직접 청구를 위한 포털 시스템을 제공할 예정이고, MIB(Motor Insurers' Bureau)가 이를 관리할 예정임24)

다. 예상효과

- 영국 법무부는 위플래쉬 개혁을 통해 연간 £11억(약 1조 7천억 원)의 비용절감 효과 및 자동차보험계약1건 당 £35의 보험료 인하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²⁵⁾
 - 비용 절감은 주로 PLSA 보상액 감소 및 소액사건 소송 건수 감소를 통해 이루어지며, 절감되는 비용 중 85%는 보험료 인하에, 나머지는 보험회사의 의료증빙 확보 등 비용 증가분에 충당될 예정임
- 영국 금융청(FCA)은 보험회사들에게 위플래쉬 개혁에 따른 비용 절감 현황을 보고하도록 할 예정임²⁶
 - ◎ 위플래쉬 개혁은 자동차보험료 절감을 위한 것이므로, 제도개혁에 따른 비용절감 효과가 보험계약자들에게 제대로 귀속되었는지를 평가하기 위하여 보험회사들에게 관련 사항에 대한 보고의무를 부과함

²²⁾ Whiplash Injury Draft Regulation s.5

²³⁾ CLA 2018 s.7, s.8

²⁴⁾ Lexology(2020. 7. 7), "Update on Whiplash Reforms in England and Wales"

²⁵⁾ Impact Assessment(2019. 1), "Civil Liability Act 2019: reforming the soft Tissue Injury ('whiplash') Claims Process"

²⁶⁾ UK Ministry of Justice, "Civil Liability Act 2018: Factual Q and A", p. 2

3. 시사적



- □ 위플래쉬 개혁은 (i) 경상환자에 대한 보상을 부분적으로 제한하되 그로 인한 이익이 전체 보험계약자에 게 귀속되도록 하였다는 점 및 (ii) 진단서 발급을 의무화함과 동시에 진단서의 객관성을 확보하고 발급 비용을 합리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음
- 경상환자 보상제도 개혁의 필요성은 우리나라를 비롯한 다수의 국가들에서 공통적으로 제기되고 있음
 - 영국 외에도 프랑스, 독일, 노르웨이, 스페인, 스웨덴, 캐나다 및 이탈리아 등에서 경상환자에 대한 보상 제도 개혁이 도입되었거나 도입 논의가 진행 중임27)
 - 우리나라에서도 교통사고 경상환자에 대한 보상기준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
 - 자동차보험은 2000년 이후 상당한 누적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데, 같은 기간 중에 경상환자에 대한 한방진료비는 크게 증가하여 이에 대한 통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²⁸⁾
 - 또한, 경미사고 대인배상의 경우 지급보험금의 변동성이 커서 불필요한 분쟁을 유발하고 보험금이 과도하게 증가할 우려가 있으므로, 이에 대한 지급기준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됨²⁹⁾
- ## 대물배상과 달리 대인배상에 대한 보상제한이나 일률적 보상기준 도입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
 - 대물배상의 경우 자원 활용의 효율성, 자동차보험 운영의 합리성, 자동차의 안전성 등을 고려하여 경미손 상에 대한 일률적 보상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음
 - 실제로 경미사고 대물배상에 대해서는 이미 2016년, 2019년 2차례에 걸쳐 제도개선이 이루어졌음
 - 2016년 제도개선(범퍼 경미손상 시 교체 대신 복원수리만 인정) 후 범퍼 교환율이 10.5% 감소하고 보험금 누수액도 395억 원 감소하여, 보험료 0.4% 인하 효과가 발생하기도 하였음³⁰⁾
 - 반면 대인배상은 경미사고라 하더라도 피해자의 나이, 사고 당시 상태 등에 따라 피해 규모 및 정도가 상이할 수 있어, 일률적 보상기준을 적용할 경우 피해자의 치료나 건강 회복에 제한이 발생할 수 있음
 - 영국의 경우 필수적 치료는 NHS에서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어, 위플래쉬-PSLA에 대한 손해배상은 필수적 치료 이외의 사항에 국한되는 것임

²⁷⁾ Impact Assessment(2019. 1), p. 4

²⁸⁾ 김창호(2020. 7), 「자동차보험 한방진료의 현황과 개선과제」, pp.3~4, pp.17~18

²⁹⁾ 전용식(2019. 5. 27), 「경미사고 대인배상 지급 기준의 필요성」, 포커스, 『KIRI 리포트』, 보험연구원

³⁰⁾ 금감원 보도자료(2019. 1. 22) "자동차보험 시세하락손해 및 경미사고 보상기준 개선", p. 4

- ➡ 허위·과다청구 방지 및 보험금 지급 합리화를 통해 전체 보험계약자의 부담을 완화할 필요성은 있음
 - 우리나라에서도 경상환자에 대한 진료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보험료 인상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는바, 경상환자에 대한 보상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통제할 필요는 있음
 - 또한 전체 보험사기 중 자동차보험이 차지하는 비중이 40%에 이르는바, 자동차사고 관련 허위·과다청구를 방지할 필요성도 있음
 - 다만 이러한 시도가 피해자에 대한 부당한 보험금 지급 제한이 되지 않도록, 피해자에 대한 신속·적절한 보상과 보험계약자 부담 경감을 조화롭게 도모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
- 경상환자에 대한 보상제도 개혁은 허위·과다청구 방지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어야 하고, 그로 인한 비용절감 효과가 전체 보험계약자에게 귀속된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함
 - 보상제도 개혁이 실질적인 비용 절감 및 보험료 인하로 이어지지 못할 경우, 개혁 자체가 무의미질 뿐 아니라 자칫 비용절감 효과가 보험회사의 이익으로 귀속된다는 오해를 유발할 우려가 있음
- 영국은 예상되는 비용절감 효과를 사전에 구체적으로 산출하고, FCA의 모니터링을 통해 개혁에 따른 이익이 보험계약자들에게 귀속된다는 점을 사후적으로도 확인하도록 함으로써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함
 - 영국 정부는 Impact Assessment를 통해 위플래쉬 개혁에 따른 비용과 효용을 사전에 객관적으로 검증하고, 절감되는 비용의 대부분을 보험료 인하의 재원으로 사용한다는 점을 명확히 함
 - 또한, FCA가 보험사들의 이행 여부를 모니터링 함으로써 운영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함
- 위플래쉬 관련 합의 시 진단서 발급을 의무화하면서 동시에 진단서의 객관성 확보방안 및 진단서 발급 비용 관리방안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제도의 실효성 및 합리성도 높을 것으로 예상됨
 - 진단서의 객관성이 담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진단서 발급을 의무화할 경우, 허위·과장청구 차단의 효과는 얻지 못한 채 관련 비용만 증가시킬 우려가 있음
 - 또한 보험금 청구액에 비해 진단서 발급 비용이 과다할 경우, 이를 의무적으로 요구하는 것이 오히려 불합리할 수 있음
 - 영국은 MedCo Portal을 통해서 진단서의 객관성을 확보하고, 진단서 발급 비용을 적정하게 관리하는 것을 전제로 진단서 발급을 의무화하였음
 - 이는 진단서 발급 의무화의 실효성과 합리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인 것으로 평가됨

4. 결어



- 자동차보험 가입자의 부담을 지나치게 증가시키지 않으면서 교통사고 피해자에 대해 적절한 보상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보험금 지급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관리하고 통제할 필요가 있음
 - 보험금 지급의 합리성 확보는 보험의 원리 및 보험 단체 전체의 이익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조치이며,이는 보험회사의 부당한 보험금 지급 거절과는 구별되어야 함
 - 경상환자에 대한 보상제도 개혁도 보험금 지급 합리화를 통한 자동차보험 가입자 부담 경감 차원에서 논의되는 것임
- □ 경상환자에 대한 보상기준 도입은 다수의 국가에서 공통적으로 고민하고 있는 문제임
 - 이에 관한 해외 주요국의 제도 변경 동향을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공유함으로써, 우리나라의 경상환자 보상제도 개선에 관한 사회적 합의를 형성해 나가는 데 참고할 필요가 있을 것임 kiҳi